

## < 변경 대비표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베트남알파증권투자신탁UH[주식]
2. 변경시행일 : 2020.10.05
3. 주요 정정사항 :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신탁계약서] :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정정 전	정정 후
<p><b>제25조(판매가격)</b>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영업일의 다음 영업일</u>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lt;단서 생략&gt;</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제3영업일</u>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b>제25조(판매가격)</b>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u>영업일</u>부터 <u>제3영업일</u>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lt;단서 현행과 같음&gt;</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제4영업일</u>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신 설>	부 칙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매입 방법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2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4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2020년 10월 5일 시행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추가	-	- 2020.10.05 :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2영업일(D+1)</u>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D+2)</u>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

		<p>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 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 적용</p>	<p>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4 영업일(D+3)</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p>
<p>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p>	<p>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 외화표시상장주식/상장채무증권 :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u>최종시가</u>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p> <p>-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u>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u></p> <p>- 장내파생상품 :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u>가격</u></p>	<p>- 외화표시상장주식/상장채무증권 :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u>전날의 최종시가</u>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p> <p>-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u>외국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u></p> <p>- 장내파생상품 :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u>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p>

<끝>.